

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, 연구활동비 집행의 책임성과 연구성과의 공개성을 강화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 및 제척·회피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)
- 나.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제4항)
- 다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하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제4항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활동비 집행, 연구성과의 활용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수 근거와 연구결과 공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.
- 이에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비의 적정한 집행과 연구성과의 공개를 제도화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안 제5조는 심의위원회에 연구용역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

고, 위원의 임기와 제척·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.

- 특히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하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1조제4항은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의 성실한 수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12조제4항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연구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연구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함.

다. 법적 타당성

-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.
-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연구활동비의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,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됨.
- 다만 안 제11조제4항은 "의장은 그 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연구활동비의 일부만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향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와 연구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과 연구성과의 공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